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

2017. 12.



특 허 청

Contents

I.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도입 안내	1
1. 실무형 문제 개념	1
2. 실무형 문제 도입 개요	2
3.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	3
II. 실무형 문제 예시	4
1. 특허법 실무형 문제 예시	4
예시문제 1	4
예시문제 2	20
예시문제 3	38
예시문제 4	54
2. 상표법 실무형 문제 예시	73
예시문제 1	73
예시문제 2	83
예시문제 3	92
예시문제 4	101

I.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도입 안내

1. 실무형 문제 개념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이다.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서, 명세서, 의견서, 답변서, 심판청구서, 소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실무형 문제를 통해 변리사가 다루는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문제 유형을 크게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학설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단문형 문제”와, 이러한 이해 위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사례형 문제”의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실무형 문제”는 법적 기초 위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응하여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다.

단문형 문제가 법리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사례형 문제가 제시된 상황에서 법리적 쟁점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논하는 것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고 있다면, 실무형 문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여러 법리적 쟁점 중에서, 출원인 등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추출하여,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제시할 수 있는지,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나 상대방의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요소로 한다.

즉, 기존의 사례형 문제가 법적 쟁점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논증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실무형 문제는 기존의 사례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더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특정한 관점 및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는 실무에서 변리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변리사 시험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현 변리사 시험이 실무 능력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실무형 문제 도입 개요

- 도입시기 :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 적용과목 :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 출제
- 문제유형 :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 출제 (본 안내서의 예시문제 참조)
- 기술수준 : 특허법 실무형 문제의 경우,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발명을 소재로 하며,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실무형 문제 출제
- 문항수 : 실무형 문제는 1문제가 출제되며, 기존 4문제 중 1문제를 실무형 문제로 대체
- 배 점 : 실무형 문제의 배점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 30점 또는 20점이 될 수 있으며, 출제위원이 30점 또는 20점 중에서 배점 결정
- 시험시간 :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의 시험시간은 140분이며, 140분 이내에 출제된 4문제를 연속하여 풀어야 함 (실무형 문제 풀이만을 위해 구분된 별도의 시간은 없음)

< 2019년도 이후 변리사 제2차 시험 >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2018년도 대비 변경사항
특허법	4	140분	실무형 문제 1문제 출제, 시험시간 20분 증가
상표법	4	140분	실무형 문제 1문제 출제, 시험시간 20분 증가
민사소송법	4	120분	-
선택과목	4	120분	-

※ 변리사 시험은 향후에도 개편될 수 있으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변리사 시험 공고문을 통해 변리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3.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

실무형 문제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 등은 기존의 사례형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실무형 문제는 문제에서 도출한 법적 쟁점을 정해진 양식과 기재 요령에 따라 풀어내야 한다는 점과, 한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형 문제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 문서의 양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원서, 명세서, 의견서, 답변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등의 실무 문서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및 상표법 시행규칙의 각종 별지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결취소소송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활용된 다양한 실무 문서를 검토해 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심사 및 심판과 관련된 실무 문서의 경우 키프리스(kipris.or.kr)와 특허로(paten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판결문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나 특허법원(patent.scourt.go.kr) 등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실제 실무 문서를 검토할 때에는, 다양한 문서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작성된 실무 문서에서 우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 실무 문서의 우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향상된다면, 실무형 문제에서 출제되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특허법 실무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전공분야와 다른 새로운 기술분야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응시자의 기술적 배경지식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용품 등과 같이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II. 실무형 문제 예시

본 예시문제는 실무형 문제의 유형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외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

1. 특허법 실무형 문제 예시

예시문제 1

명세서(청구범위)의 작성

甲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삽”(첨부자료 1)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발명(첨부자료 2)을 완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변리사 乙에게 의뢰하였다.

변리사 乙은 甲의 의뢰를 받은 후 특허출원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첨부자료 3)을 작성하고 있으며, 아직 【과제의 해결 수단】 및 【청구범위】 부분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제시된 첨부자료만을 기준으로 甲이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乙의 입장에서 【청구범위】를 작성하시오. (2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선행기술문헌

첨부자료 2 : 甲의 개량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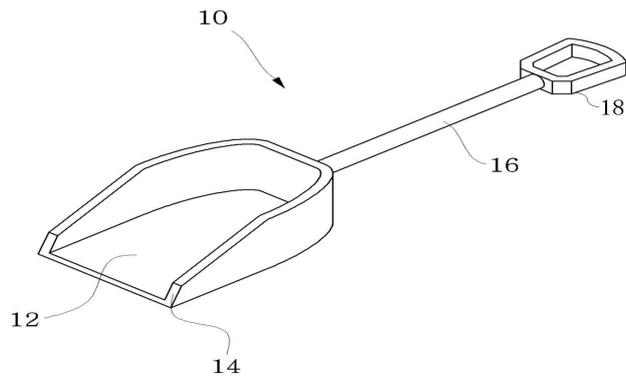
첨부자료 3 : 명세서 및 도면의 초안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2년05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12345
	(24) 등록일자 2012년05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0-0023456	
(22) 출원일자 2010년08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8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2-0003456	
(43) 공개일자 2012년02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p>【요약】</p> <p>본 발명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10)에 관한 것이다.</p> <p>본 발명에 따른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 등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결합되는 작업부(16)로 구성된다.</p> <p>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p> <p>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p> <p>연소기구로 난방을 하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p>	

【대표도】



(가)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기술사상의 문제점과 발명의 발상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부삽(10)의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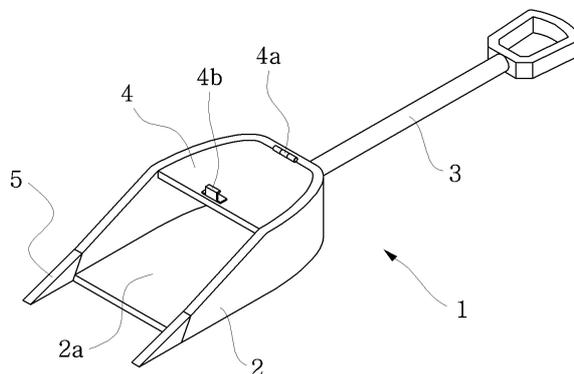
따라서 부삽(10)의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발명의 발상이다.

(나)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1)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부삽과 달리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통해 부삽(1)의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이 수용공간(2a) 밖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 발명의 도면



(라) 발명의 효과

부삽(1)에, ① 상면막음부(4)만 장착하는 경우, ② 측면막음부(5)만 장착하는 경우, ③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함께 장착하는 경우의 3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를 함께 장착하는 경우에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효과가 가장 탁월하였고, 측면막음부(5)만 장착하는 경우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명세서】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미작성 ===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면막음부 또는 측면막음부에 의해 부삽의 수용공간에 퍼 담아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4】 제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

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실시에 3】

도 4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

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한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3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

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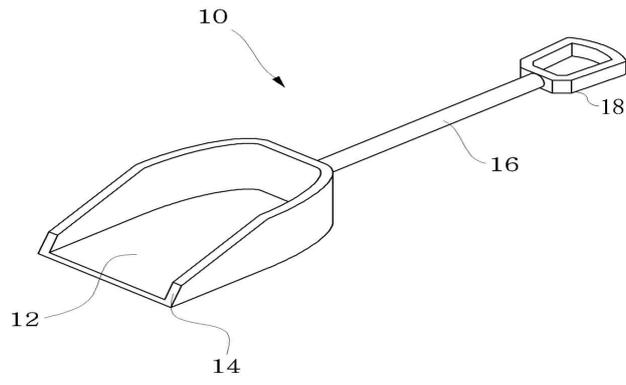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청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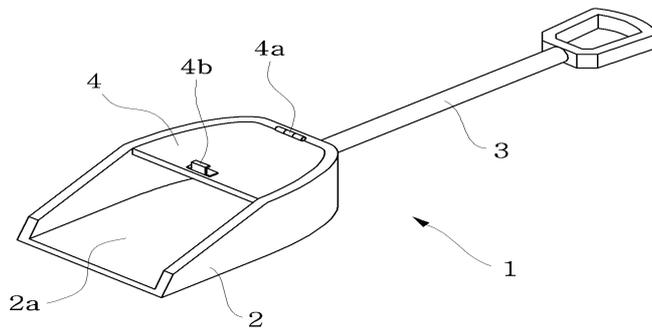
=== 미작성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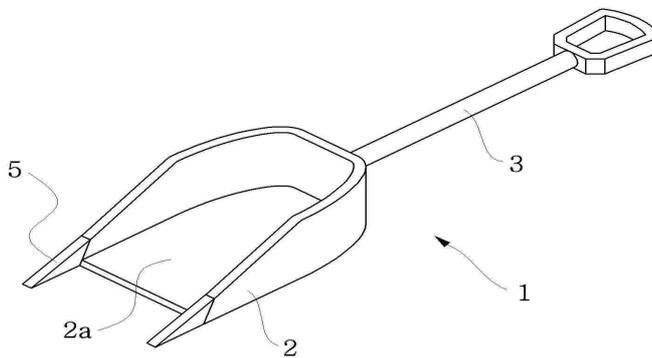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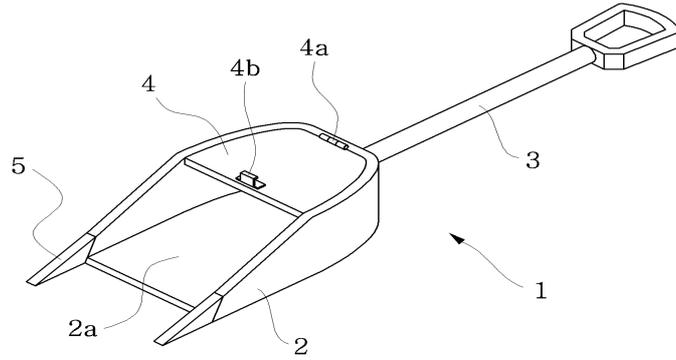
【도 2】



【도 3】



【도 4】



이 문제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명세서의 경우 변리사 실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발명을 하였으며, 그러한 발명에 기하여 어떠한 내용의 특허권을 부여받기를 원하는지를 밝힌 문서이다. 특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능력은 변리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이러한 형태의 청구범위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42조 및 제45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해서는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법 제29조, 제42조 및 제45조에 위배되는 기재가 있으면 감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청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속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체 청구항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출원인의 비용부담이나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등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특허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은 특허출원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예시문제 2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甲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발명하여 2017년 2월 1일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7-0000077, 첨부자료 1)하였고, 그 후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첨부자료 2)를 받았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 甲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할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첨부자료 2 : 의견제출통지서

첨부자료 3 : 인용발명 1

첨부자료 4 : 인용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의견서의 경우 의견내용만 작성하고,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5. 보정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것
6. 보정서 작성 시 의견서와 보정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명세서】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

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는 내열성이 우수한 (주)한국공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

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어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는 내열성이 우수한 (주)한국공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어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청구범위】

【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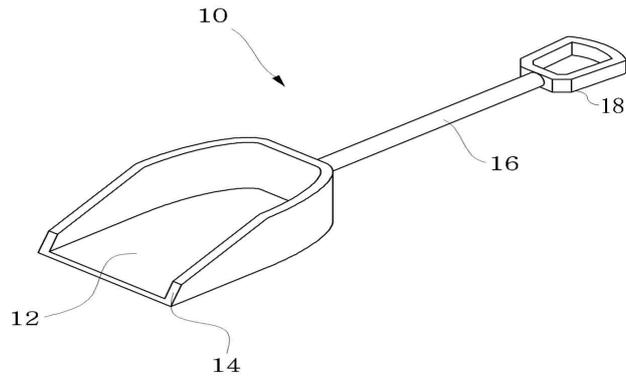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주)한국공업이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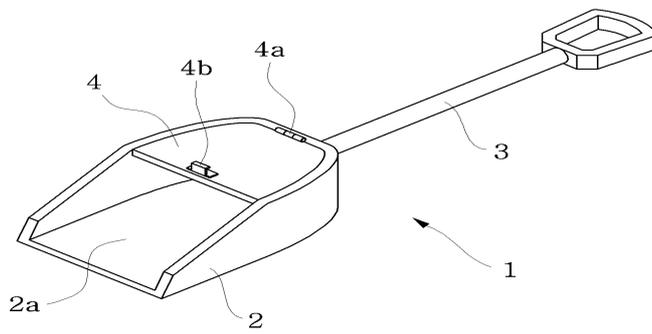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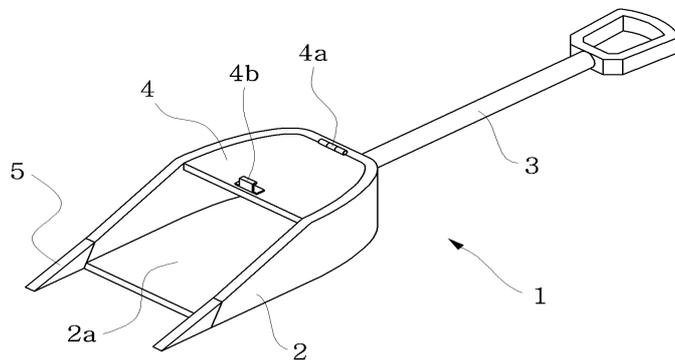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발송일자: 2017.12.10.

제출기일: 2018.02.10.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甲			
	주 소	000 000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발 명 자	성 명	甲			
	주 소	000 000			
출 원 번 호	10-2017-0000077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청구항 1 내지 6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1 내지 4	특허법 제29조제2항
2	청구항 5 및 6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1 내지 4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 * 인용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2015.03.10.공고)
- * 인용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2015.01.15.공개)

1-1. 청구항 1과 인용발명1은 모두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서로 동일합니다. 인용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박스(111)에 힌지부(114)로 연결된 커버(11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1과 인용발명 1을 비교해보면,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는 인용발명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각각 동일하고, 다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 1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인용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구성으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1-2.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인용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동일하고,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인 특징은 인용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인 특징과 동일하며,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인용발명 2의 힌지부(114)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를 통해 청구항 2 내지 4를 쉽게 발명해 낼 수 있습니다.

2. 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5 및 6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2-1. 청구항 5에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관계 없는 특정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2. 청구항 6은 청구항 5의 종속항으로 상기 2-1의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6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첨부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2015.03.10.공고) 1부.

첨부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2015.01.15.공개) 1부. 끝.

2017.12.10.

특허청

특허심사1국

주거생활심사과

심사관 ○○○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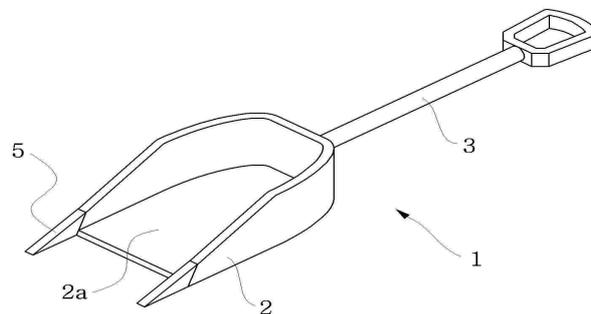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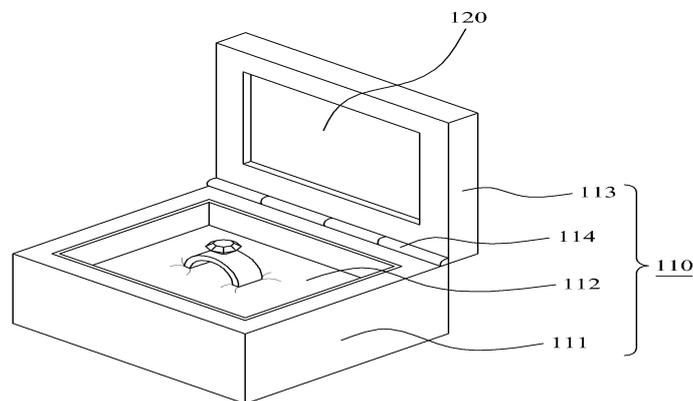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이 문제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의견서 및 보정서이다.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견서와 보정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의견서의 경우 ‘거절이유의 요지’, ‘보정의 내용’, ‘출원인의 의견’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보정의 내용’에는 기재불비 사항 및 진보성 결여 등과 같은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보정에 관한 내용이 작성된다. ‘출원인의 의견’에는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출원인의 의견이 작성된다. 예컨대 심사관이 진보성의 결여를 근거로 거절이유를 제시하였다면, 출원인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비교·검토를 통해 진보성이 있다는 의견을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수준의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의견서에서 작성한 보정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 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정의 방향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심사관이 특정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아니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청구항 중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견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은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내용】

I. 거절이유의 요지

1. 청구항 1 내지 4 :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해당
2. 청구항 5 및 6 :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

II. 보정의 내용

본 출원인은 청구항 5를 삭제하고 청구항 6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III. 출원인의 의견

1. 거절이유 1(청구항 1 내지 4 :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해당) 관련

청구항 1의 거절이유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인용발명은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항 1은 부삽에 관한 발명이고, 인용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이동을 방지하여, 불씨나 재 등이 수거부(2)의

상부측 방향으로 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밀폐하는 경우 단순한 덮개 기능을 수행하고, 개방하는 경우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인용발명 2의 커버(113)에 이송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효과나 용도가 없고, 인용발명 2에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발명 2는 청구항 1과 기술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항 1과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가 관련된 인접한 기술분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인용발명 2는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에 사용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또한 심사관님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가 인용발명 2의 커버(113)에 의해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하였으나,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박스(111) 상부측 전체를 덮는데 반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만을 덮는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2의 커버(113)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서로 다른 구성이고, 따라서 인용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예측해 낼 수 없습니다.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가 수거부(2)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시예의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용발명 2의 커버(113)는 수용물의 출입을 위해 반드시 개폐되어야 하지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는 이송물의 출입을 위해 개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청구항 1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와 같은 구성이 인용발명 2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인용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에 따라 청구항 1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용발명 2에는 이송물이 박스(111) 상부측을 통해 낙하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인용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커버(113)가 개방되는 경우 화상 및 음성이

출력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며, 결코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5)와 같은 구성이 도출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발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구항 2 내지 4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없습니다.

2. 거절이유 2(청구항 5 및 6 :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 관련

특정 회사명이 기재된 청구항 5를 삭제하고, 청구항 6이 인용하는 항을 청구항 5에서 청구항 4로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위배되는 부분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해 낼 수 없고, 보정에 의해 청구항 6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되오니, 다시 심사하여 등록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정정)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상부면에 손잡이(4b)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예시문제 3

심판청구서의 작성

(주)한국공업은 “부삽”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이다. 어느 날, 등록번호 제 10-0000123호(첨부자료 1)의 특허권자 甲(첨부자료 2)이 (주)한국공업에게 “부삽”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甲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주)한국공업은 자사가 판매하는 “부삽”이 甲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삽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 특허권을 무효시키고자 선행 기술문헌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3) 및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4)를 확인하였다.

(주)한국공업은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3) 및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4)를 근거로 청구범위 전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위 사실만을 근거로 무효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오. 단,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만 작성하되,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등록특허공보
- 첨부자료 2 : 특허등록원부
- 첨부자료 3 : 비교대상발명 1
- 첨부자료 4 : 비교대상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주)한국공업이 생산·판매하는 부삽은 甲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
5.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등록특허공보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7년02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00123
	(24) 등록일자 2017년02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甲 (72) 발명자 甲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5-0001234	
(22) 출원일자 2015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4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6-0012345	
(43) 공개일자 2016년10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발명의 명칭 :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p>【청구범위】</p> <p>【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p> <p>【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p>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 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 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 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 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 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 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 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 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 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 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 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 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 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 (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어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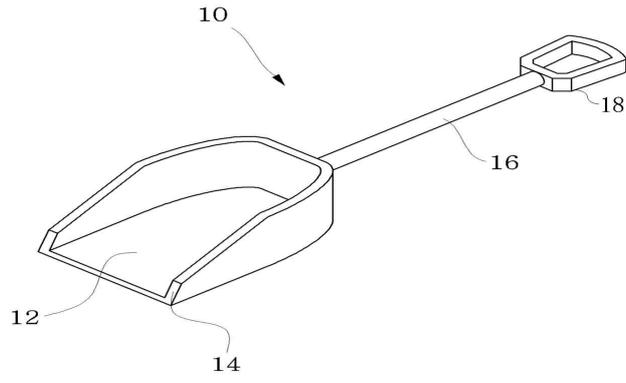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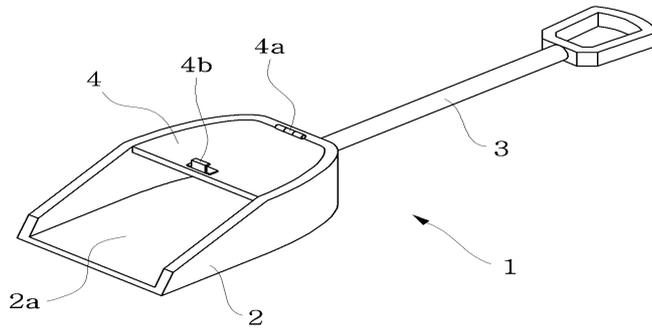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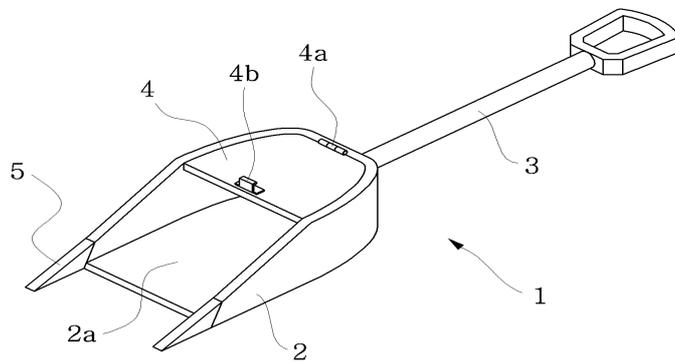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2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000123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5년04월01일
	출원번호	2015-0001234
	공고연월일	2017년02월10일
	특허결정연월일	2017년01월30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A47L 13/52, F24B 15/06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04월01일

[특허료란]

제01-03년분(2017.02.01.~2020.02.01.) 금액 000,000원

2017년02월01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2월01일 등록

이하여백

3

비교대상발명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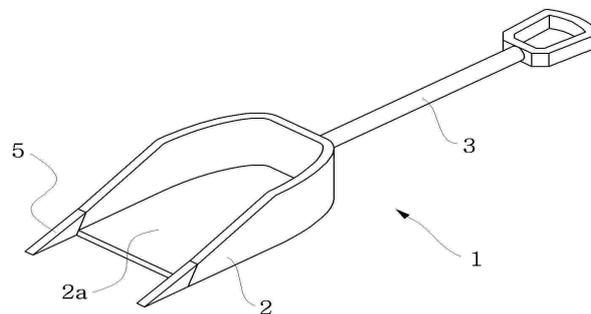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4

비교대상발명 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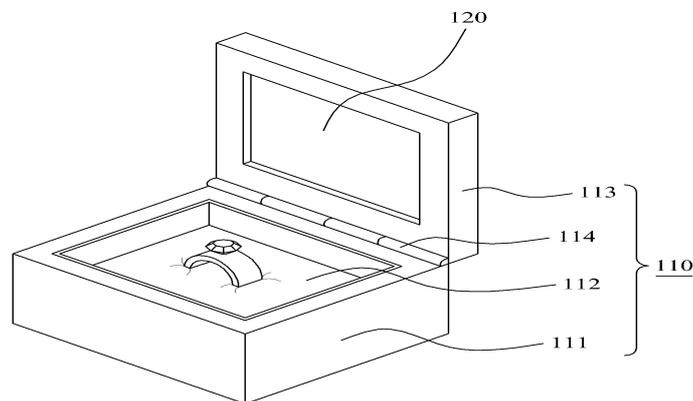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이 문제는 심판청구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요령을 파악하고 있는지, 각각의 심판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한지, 법적 쟁점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지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심판청구서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가 있다. '청구의 취지'에는 청구인이 구하는 심결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의 이유'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무효심판에 관한 사안이며,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라 청구범위 전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이해관계인의 소명, 비교대상발명(무효증거)의 특징,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주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심판청구서)은 심판청구서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의 취지】

1. 특허 제123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생략)

2. 이해관계의 소명

심판청구인인 (주)한국공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생산 및 판매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 습니다. 즉, 심판청구인인 (주)한국공업은 당해 특허권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 계인입니다.

3. 무효 사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 내지 4의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하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 무효 증거

- (1) 비교대상발명 1 : 등록특허공보 제10-0056789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하는 부삽에 관한 것입니다.

(2) 비교대상발명 2 :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00099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2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된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박스본체(110)는, 선물을 수납할 수 있는 선물 수납부(112)를 구비하는 박스(111), 그리고 상기 박스(111)에 힌지부(114)를 통하여 개폐가능하게 결합되는 커버(113)로 구성됩니다.

나. 진보성 판단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합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기술분야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산업분야가 특허발명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로 연결된 커버(113)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러 산업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대비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는 비교대상발명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박스본체(110) 내부 물건의 낙하 또는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힌지부(114)를 통해 어느 곳에든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구성이고, 따라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과,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와 각각 동일합니다.

(3) 효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부삽의 상면막음부 또는 측면막음부에 의해 이송물이 수거부 밖으로 이동되는 것이 방지됨으로써,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되어도,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4) 소결

결국 청구항 1 내지 4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목적 및 작용, 효과면에서도 특이성이 있다거나 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결정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제 4

소장의 작성

甲은 등록특허공보(첨부자료 1) 및 특허등록원부(첨부자료 2)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의 특허권자이다. 이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가 있었고, 위 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12.12.자로 청구범위 전항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첨부자료 3)을 하였다.

甲은 위 특허권의 청구범위 전항이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4)과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5)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심결에 승복할 수 없어, 특허법 제 186조에 따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실만을 근거로 무효심결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단,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작성하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 첨부자료 1 : 등록특허공보
- 첨부자료 2 : 특허등록원부
- 첨부자료 3 : 심결문
- 첨부자료 4 : 비교대상발명 1
- 첨부자료 5 : 비교대상발명 2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등록특허공보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7년02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00123
	(24) 등록일자 2017년02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L 13/52 (2006.01) F24B 15/06 (2006.01)	(73) 특허권자 甲 (72) 발명자 甲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5-0001234	
(22) 출원일자 2015년04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4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6-0012345	
(43) 공개일자 2016년10월10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발명의 명칭 :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p>【청구범위】</p> <p>【청구항 1】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및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p> <p>【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p>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측면막음부(5)는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소기구에서의 연소 등에 필요한 각종 이송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부삽은 난로와 같은 연소기구에 석탄이나 목탄과 같은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거부 및 상기 수거부에 결합되는 작업부로 구성된다.

예컨대, 도 1에서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삽(10)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12)을 갖는 수거부(14)와, 상기 수거부(14)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16)를 포함하며, 상기 수거부(14)에 상기 작업부(16)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상기 수거부(14)는 양측벽면과 후방벽면이 직립 상태로 절곡되어 상기 이송물의 수용공간(12)을 형성하고, 상기 수거부(14)의 전방면과 상부면은 개방되어 상기 이송물의 유입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수거부(14)의 후면에는 상기 작업부(16)가 억지끼움식으로 결합되는 고정홈(미도시)이 형성된다.

상기 작업부(16)는 일측부가 상기 수거부(14)의 상기 고정홈(미도시)에 결합되며, 타측부에는 사각고리 모양의 손잡이(18)가 형성된다.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16)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14)의 경사각도를 조정한 후, 상기 수거부(14)를 이용하여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과립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불씨나 재를 퍼 담아 처리한다.

그런데, 상기 부삽(10)은 적어도 다음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째,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이송물을 퍼 담은 상태에서, 상기 부삽(10)에 외력이 가해져 상기 수거부(14)가 유동하는 경우, 상기 수용공간(12)의 이송물이 주변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상기 수용공간(12) 내의 이송물 중 하나인 불씨가 주변으로 비산되는 경우,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기 부삽(10)의 상기 수용공간(12)에 수용되는 이송물이 낙하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삽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등록특허공보 제10-0012345호(2012.05.10. 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 부삽의 수거부에 퍼 담아진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는 물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삽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갖는 수거부와, 상기 수거부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 상기 수거부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 그리고 상기 수거부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상면막음부 또는 상기 측면막음부에 의해 상기 부삽의 상기 수용공간에 퍼 담겨진 이송물이 이동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오염의 방지는 물론 이송물 중의 불씨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적어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2】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도 3】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부삽을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 막음부(4)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겨진 이송 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에 의해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용공간(2a)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 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 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 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 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 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 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 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 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과립연료나 불씨나 재를 포함한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에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상부측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면 막음부(4),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 부(5)를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부삽(1)은 상기 수거부(2)와 상기 작업부(3)와 상기 상면 막음부(4)와 상기 측면막음부(5)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특히 상기 수용공간 (2a)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동시에 차단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수거부(2)에는 상기 이송물이 수용되는 소정 크기의 수용공간(2a)이 형성되며, 상기 수거부(2)의 전방측 및 전방상부측은 개방되어 있다.

상기 수거부(2)의 양측벽면 및 후방벽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거부(2) 받침판의 넓이를 조절하여 상기 수용공간(2a)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거부(2)는 전체를 일체로 형성함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거부(2)의 크기 및 형상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이송물을 수용할 수 있다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된다.

상기 수거부(2)는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금속으로 성형함이 바람직하나, 상기 금속 이외에도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면 본 발명의 기술 범주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수거부(2)에 체결부재를 사용하여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작업부(3)는 상기 수거부(2)와 동일 재질로 형성할 수 있지만, 무게를 고려하여 목재나 합성수지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는 상기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을 밀폐하는 것으로, 상기 수거부(2)의 후방벽면에 힌지축(4a)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상기 상면막음부(4)에 손잡이(4b)를 장착하여 상기 상면막음부(4)의 개폐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수용공간(2a)에 퍼 담어진 이송물이 양측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측면막음부(5)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선단부가 뾰족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측면막음부(5)는 별도의 부재를 상기 수거부(2)에 부착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상기 수거부(2)와 일체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에 따른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연소기구에 과립연료를 퍼 넣거나 또는 연소기구에서 불씨나 재를 퍼 내려는 경우, 작업자는 상기 작업부(3)를 손으로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에 원하는 양만큼의 이송물을 퍼 담아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부삽(1)에 외력이 가해져 수거부(2)가 유동하더라도,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되어 있던 이송물이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상기 측면막음부(5)에 의해 차단되어 수거부(2)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특히 상기 연소기구에서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면막음부(4) 및 측면막음부(5)에 의해 불씨나 재의 낙하 및 비산이 차단되므로, 상기 불씨나 재에 의한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상기 상면막음부(4)의 손잡이(4b)를 이용하여 상기 수거부(2)의 수용공간(2a)을 선택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기 수용공간(2a)에 이송물이 적층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청소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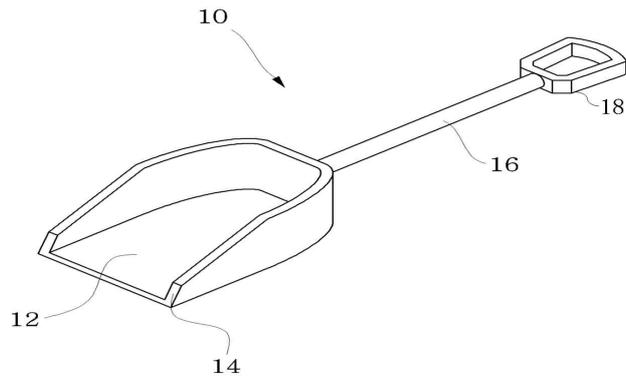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청구범위에서 청구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벗어남 없이 실시되는 변형된 형태는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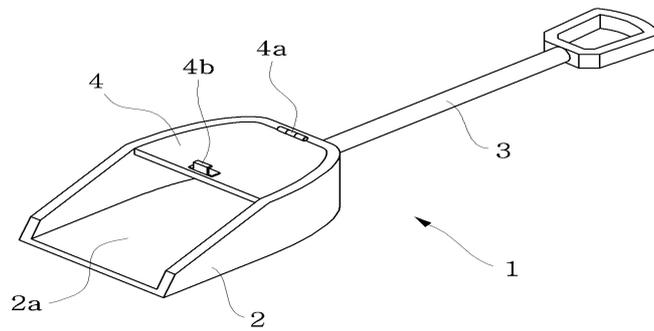
- | | |
|-----------|-----------|
| 1 : 부삽 | 2 : 수거부 |
| 2a : 수용공간 | 3 : 작업부 |
| 4 : 상면막음부 | 4a : 힌지축 |
| 4b : 손잡이 | 5 : 측면막음부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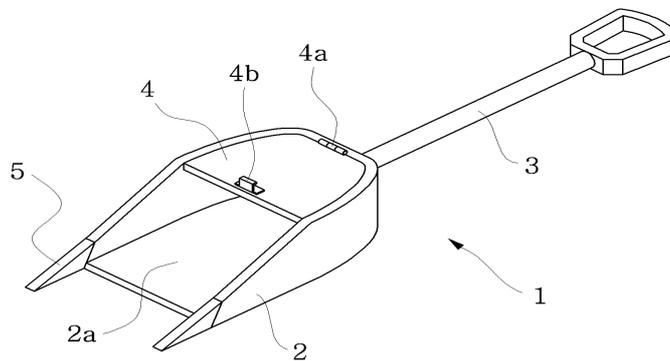
【도 1】



【도 2】



【도 3】



2

특허등록원부

특 허 번 호

제 0000123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5년04월01일
	출원번호	2015-0001234
	공고연월일	2017년02월10일
	특허결정연월일	2017년01월30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A47L 13/52, F24B 15/06
	발명의 명칭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04월01일

[특허료란]

제01-03년분(2017.02.01.~2020.02.01.) 금액 000,000원

2017년02월01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2월01일 등록

이하여백

특 허 심 판 원
심 결

심판번호 2017당1234
심 결 일 2017.12.12.

주 문

1. 특허 제123호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의 취지

1. 특허 제123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에 기재된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은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며, 또한 목적 및 작용, 효과 면에서도 특이성이 있다거나 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분야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부분인 상면막음부(4)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교대상이 아니며,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는 부삽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는 화상 및 음성 출력은 물론 쌍방향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선물박스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에도 수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개시하고 있다고 가정함이 타당하며, 그 기술분야도 비교대상발명1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인정된다.

나. 구성 대비

청구항 1의 부삽은 수거부(2), 작업부(3) 및 상면막음부(4)를 포함한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청구항 1의 수거부(2) 및 작업부(3)와 각각 동일한 수거부(2) 및 작업부(3)가 개시되어 있다.

다만, 이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가 수송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통해 청구항 1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개시 또는 시사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항 2의 측면막음부(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와, 청구항

3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 측면막음부(5) 선단이 뾰족한 특징과, 청구항 4의 힌지축(4a)은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부(114)와 각각 동일하다.

다. 효과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을 방지함으로써, 수용물의 낙하 및 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와 대비하여 그 기술분야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의 차이나 결합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 판 장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

4

비교대상발명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15년03월10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0056789
	(24) 등록일자	2015년03월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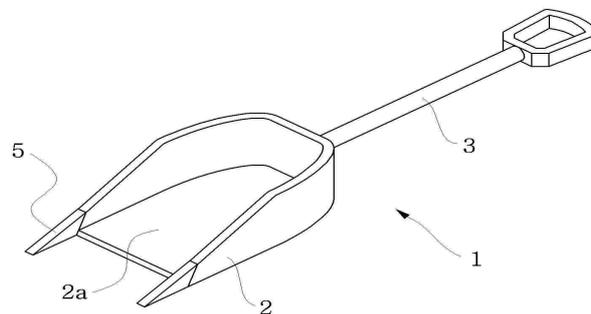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3) 특허권자	○○○
A47L 13/52 (2006.01)	(72) 발명자	○○○
F24B 15/06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67890	
(22) 출원일자	2013년08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8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5-0078900	
(43) 공개일자	2015년02월25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요약】

본 발명은 불씨나 재 등 각종 이송물을 나르기 위한 부삽(1)에 관한 것으로, 상기 부삽(1)은 각종 이송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2a)을 갖는 수거부(2)와, 상기 수거부(2)에 장착되어 작업자가 손으로 잡는 작업부(3), 그리고 상기 수거부(2)의 전방 양측에 돌출된 형태로 장착되어 상기 수용공간(2a)에 수용된 이송물이 양측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막음부(5)를 포함한다.

【대표도】



5 비교대상발명 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5-0000099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5년01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
A45C 11/16 (2006.01)	(72) 발명자	○○○
B65D 25/02 (2006.01)	(74) 대리인	○○○

(21) 출원번호 10-2013-0000088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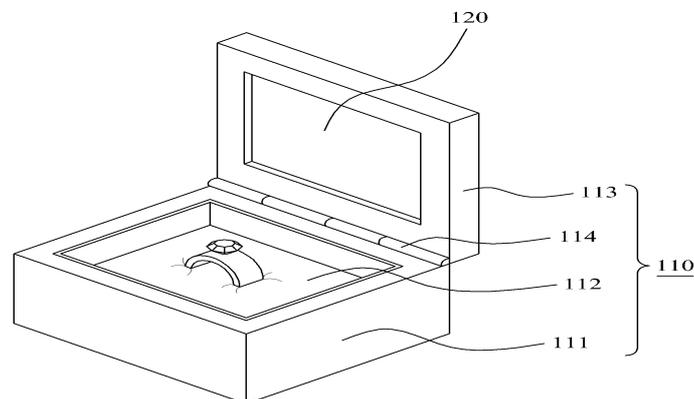
심사청구일자 2013년09월01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요약】

본 발명은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선물박스에 관한 것으로, 상기 선물박스는 박스본체(110)와 디스플레이(120)로 구성되며, 상기 박스본체(110)는 박스(111), 선물수납부(112), 커버(113), 힌지부(114)로 구성된다. 커버(113)를 열면, 선물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선물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이 문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응하여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결취소소송도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장 작성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소장 기재요령을 파악하고 있는지, 각각의 소송 유형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한지, 법적 쟁점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전개되었는지 등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소장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사건의 개요 및 심결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심결문을 세밀히 분석하여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법리 등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문제의 경우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결합에 이르는 암시나 동기 등이 비교대상발명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합이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심결취소소송의 양식은 소장의 작성에 관한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7.12.12.자 2017당123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특허 제123호의 특허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2017당 1234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생략)

3.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는 것입니다.

4. 심결 취소사유

가. 기술분야 대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비교대상인 발명은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

야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삽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선물박스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에 퍼 담겨진 이송물의 이동을 방지하여, 불씨나 재 등이 수거부(2)의 상부측 방향으로 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밀폐하는 경우 단순한 덮개 기능을 수행하고, 개방하는 경우 화상 및 음성 출력 기능과 쌍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이송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효과나 용도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과제나 효과 또는 용도가 관련된 인접한 기술분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에 사용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나. 구성 대비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가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박스(111) 상부측 전체를 덮는데 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수거부(2)의 후방상부측만을 덮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서로 다른 구성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가 수거부(2)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시예의 “상기 상면막음부(4)의 넓이는 상기 수거부(2)의 상부측 전체를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는 수송물의 출입을 위해 반드시 개폐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는 이송물의 출입을 위해 개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만을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4)와 같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합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송물이 박스(111) 상부측을 통해 낙하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비교대상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커버(113)가 개방되는 경우 화상 및 음성이 출력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면막음부(5)와 같은 구성이 도출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효과 대비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 모두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버(113)를 결합하게 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수거부(2) 상부측 전체가 막히게 되어 부삽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부삽으로 이송물을 이송하는 중 발생하는 이송물의 낙하나 비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각종 오염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의 사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위법한 심결에 해당하고,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 상표법 실무형 문제 예시

예시문제 1

의견서의 작성

제시된 상표등록출원서(첨부자료 1), 의견제출통지서(첨부자료 2) 및 참고자료(첨부자료 3)를 검토하여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십시오(필요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이 가능함). (2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출원서

첨부자료 2 : 의견제출통지서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의견내용만 작성하고,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5. 참고자료(첨부자료 3) 중 필요한 부분 활용 가능
6. 보정을 하는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1

상표등록출원서

【상품류】

제30류

【지정상품】

차(tea), 인스턴트 차(instant tea), 레몬 차(lemon tea)

【상표견본】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000 000
출 원 번 호		40-2017-0068657
상 품 류		제30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유 1]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출원상표 “” 는 문자 “MaxTea” 와 “lemon tea” , 그리고 도형 “음료가 담긴 컵 및 빨대” , “레몬 사진” 및 “기타 색채가 있는 배경부분 등” 으로 구성된 표장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MaxTea” 는 ‘최고의 차’ 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해당하고, “lemon tea” 는 ‘레몬 차’ 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성질(원재료 등)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음료가 담긴 컵 및 빨대” 도형은 컵에 담긴 음료가 출렁이는 일반적인 모양에 불과하고, “레몬” 도형은 레몬을 찍은 사물사진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기타 색채가 있는 배경부분 등” 은 문자 및 다른 도형의 부수적·보조적인 배경으로 인식될 뿐이어서 특별현저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결

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지정상품 : 전부)

[거절이유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이 출원상표는 “lemon tea” 부분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 중 “차(tea)” 및 “인스턴트 차(instant tea)” 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내용이 레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지정상품 : 차(tea), 인스턴트 차(instant tea)) 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3과

심사관 ○○○

3 참고자료

(1) max 영어사전 검색결과

max는 ‘maximum’의 약어로서 ‘수’ 또는 ‘양’과 함께 사용되며, ‘최대’, ‘최고치’의 의미이다.

(2) 심사 선례

출원상표	지정상품	최종처분
MaxTex	라미네이트직물	등록
Max caffeine	커피	거절

(3) 다수인의 사용 여부

출원인 이외의 제3자가 “Max”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차(tea) 관련 제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타 다수인이 차(tea) 관련 제품에 “Max”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실제사건(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거쳐 등록된 사례)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제이다. 의견서 작성 문제에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각각의 거절이유(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제34조제1항제12호)에 대한 반박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데, 이때 각 조문의 의의, 판단방법, 사안의 적용, 심사선례의 검토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선례의 검토와 관련하여, 유사한 심사선례로 “커피”에 대한 “Max caffeine”은 거절되었으나, “직물”에 대한 “MaxTex”는 등록되었는 바, 이러한 심사선례를 출원인 입장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예시(근거)로 활용하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가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호에 대한 실무상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의 거절이유와 관련해서는,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보정의 적합여부와 관련하여,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보정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의견서 제출시에 요지변경에 대한 일반론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답안에서 요지변경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내용】

I. 거절이유의 요지

1. 지정상품 전부 :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
2. 지정상품 중 차 및 인스턴트 차 :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

II. 출원인의 의견

1. 거절이유 1(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 관련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판단기준

상표법은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표시표장은 통상적으로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 호에서 말하는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할 수 있는 표시를 말하며, 단순히 암시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 판단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출원상표는 ‘(품질이) 최고의 차’ 등과 같은 의미로 직감되는 표장이

아닙니다. 심사관님께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MaxTea” 부분이 '최고의 차'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의 ‘max 영어사전 검색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max’ 는 maximum의 약어로서 ‘수’ 또는 ‘양’ 과 함께 사용되어 (수치가) ‘최고치’ 또는 (양이) ‘최대’ 라는 의미로 사용·인식되는 단어이지, ‘품질이 최고’ 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즉, ‘Max’ 는 ‘Min’ 의 반의어로서 주로 ‘양이 최대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 ‘품질이 우수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최고의 차 (best quality tea)'라는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MaxTea” 부분이 '최고의 차'라는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불과하다는 심사관님의 지적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양적으로) 최대의 차' 라는 의미로 직감되는 표장도 아닙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MaxTea” 부분이 '(양적으로) 최대의 차'로 인식될 수 있다 하여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양이 최대한으로 많은 차' 등으로 상품의 성질을 직감케 하는 성질표시표장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Max 는 '최대 강우량(the rainfall max.)'이나 '최대값(the max. value)'과 같이 양을 나타내는 단어(강우량, 값 등)와 함께 사용되어 양을 한정하는 것이지, 양과 무관한 일반 물건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명사를 한정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MaxTea” 를 굳이 해석하자면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관념이 도출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의 성질을 - 양이 최대한으로 많은 등으로 -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양적으로) 최대의 차'라는 말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의 심사선례를 살펴보면, 비록 ‘커피’ 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Max caffeine’ 은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이는 ‘커피’ 의 본래적 성질이 원래 ‘카페인’ 을 함유하는 음료인 관계로, 커피에 대하여 ‘Max caffeine’ 이라는 표장은 ‘decaffeinated coffee(디카페인 커피)’ 와 반대로 줄음 등을 쫓을 수 있게 카페인이 '(양적으로) 최대가 포함된' 등의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제33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차’ 에 대하여 ‘MaxTea’ 로 구성된 이 사건 표장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직물’ 에 대한 ‘MaxTex’ 는 등록이 되었는 바, 이는 주로 양적으로 최대라는 의미의 ‘Max’ 가 ‘직물’ 에 사용된다 하여도 ‘최고의 직물’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양적으로) 최대인 직물' 등의 관념이 도출된다 하여도,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직감케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된 것이며, 이러한 심

사선례는 ‘차’ 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MaxTea’ 가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사선례라고 할 것입니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MaxTea” 는 심사관님의 지적과 같이 ‘품질이 최고인 차’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볼 수 없고, 나아가 양이 많다는 의미로 관념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관념이 지정상품 ‘차’ 와 관련하여 ‘양이 최대인 차’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직감케 하는 표장이 아닌 하나의 조어상표로 ‘맥스티’ 와 같이 호칭되고 식별되는 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표법은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및 심사기준 등에 의하면 본 호에서 말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란 i)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ii)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iii)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직감케 하는 표장이 아닌 전체적으로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고, 참고자료에 의할 때 출원인 이외의 제3자가 “Max” 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차 관련 제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기타 다수인이 차 관련 제품에 “Max” 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 볼 수 없고, 기타 특정인에게 독점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33조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거절이유 2(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 관련

거절이유 2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보정서를 통하여 지정상품 중 “차” 및 “인스턴트 차” 를 모두 '레몬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으로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 2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와,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 의견서 및 보정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제 2

이의신청서의 작성

甲사는 자사의 등록상표(첨부자료 1)인 “^{리더스}LEADER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공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특허사무소 A에 의뢰하였다.

특허사무소 A에서는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공고(첨부자료 2)된 사실을 확인하고 甲사에 보고하였으며, 甲사는 乙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특허사무소 A에 의뢰하였다.

특허사무소 A의 소속 변리사로서 乙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시키기 위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오. 다만, 甲사의 등록상표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수년간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수요자에게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의신청의 이유로 주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甲사는 건강진단 등과 같이 병원에서 행하여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의사가 없다. (3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첨부자료 2 : 출원공고상표공보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이의신청 취지 및 이의신청 이유만 작성할 것
5. 참고자료(첨부자료 3) 중 필요한 부분 활용 가능
6.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654321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16년09월10일	리더스 LEADERS
	출원번호	2016-0011111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7년03월15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03월15일	
	지정상품	제44류 : 마사지업, 미용실업, 이용업, 손톱미용업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7.03.15.~2027.03.15.) 금액 000,000원 2017년03월15일 납입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3월15일 등록

이하여백

2

출원공고상표공보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출원공고상표공보

(260) 출원공고번호 40-2017-0011111

(442) 출원공고일자 2017년12월12일

(210) 출원번호 40-2017-0012345

(220) 출원일자 2017년05월20일

(731) 출원인 乙

(740) 대리인 ○○○

(511) 지정상품(업무)

제44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상표견본



TOTAL BEAUTYCLINIC

리더스미

(1) 乙의 사용태양



로고를 사용하여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음

(2) ‘리더스’ 와 관련된 다수인의 사용 여부

UNIVERA WELLNESS LEADER, 리더M, Fine Fit Leader, 에코리더, Coreana Time Leader 등의 등록상표가 제3류 화장품, 제44류 미용업과 관련하여 모두 다른 권리자 소유로 존재하고 있음

(3) ‘미’ 와 관련된 다수인의 사용 여부

미헤어두피, 쉬앤미헤어, 미미용실, 미그리고센스미용실, 미헤어샵, 미헤어플러스, 미헤어코리아와 같은 상표가 미용업에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 문제는 무효심판사건을 이의신청사건으로 각색한 문제이다. 상표의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인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양식에 알맞게 적절한 거절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의신청서에서 제시된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여 법적인 항변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의신청의 이유가 제시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의의 및 취지, 적용 요건, 적용 결과 순으로 이의신청 이유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판단의 의의와 외관·칭호·관념의 대비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문자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취지】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 상표등록출원 제40-2017-0012345호는 거절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이 사건 출원상표

상표등록출원 제40-2017-0012345호(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 라고 합니다)는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건강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7.5.20.자로 출원되어 2017.12.12.자로 출원공고된 상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2017.3.15.자로 등록된 선등록상표(제40-0654321호)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의의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등록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범위 내에서 상호 저촉되는 상표가 중복하여 등록됨에 따른 일반 수요자의 출처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적용 요건

본 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여야 하고, (ii)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iii)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

는 유사하여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존재 여부

선등록상표의 출원일(2016.9.10.)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2017.5.20.)에 앞서고, 2017.3.15.자 등록된 선등록상표가 현재까지 유효하며,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상이하므로 상기 (i)의 요건은 만족합니다.

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판단의 의의 및 기준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칭호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문자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주요부인 ‘리더스미’로 호칭될 것입니다. 또한 선등록상표는 ‘리더스’로 호칭됩니다.

문자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광고 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이므로, 어두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며, 비교적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칭호의 첫음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되고 확립된 태도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4음절의 단어로서, ‘리더스미’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3음절의 단어로서 ‘리더스’로 호칭되는 바, 앞의 3음절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칭호가 극히 유사한 상표입니다.

‘리더스미’에서 요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법원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

한 인상을 심어주어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을 대비함으로써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더스’ 부분의 식별력 존부를 살펴보면, ‘리더스/leaders’는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서 ‘미용실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입니다. ‘화장품’ 또는 ‘미용업’과 관련하여 ‘LEADER’ 또는 ‘리더’를 포함한 등록상표들이 존재하지만, 식별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상표가 식별력이 없다 하여 그 복수형이 식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더스/leaders’는 식별력을 갖는 요부로 봄이 타당합니다.

‘미’ 부분의 식별력 존부를 살펴보면, ‘미’는 한자 ‘美’의 한글음역으로서 미용업계의 상표로서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검색결과에 따르면, 미용업과 관련하여 ‘미헤어두피’, ‘쉬앤미헤어’, ‘미미용실’, ‘미헤어샵’ 등 다수의 상표가 검색됩니다. 즉, ‘미’는 미용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상실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스미’를 수요자들은 ‘리더스’와 ‘미’로 분리하여 ‘미’는 미용업에 흔히 쓰이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볼 것이므로, ‘리더스’부분을 요부로 인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요부 ‘리더스’의 칭호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3) 관념의 대비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아름다움의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은 ‘지도자들’이라는 선등록상표의 관념에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유사합니다.

(4)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LDSM을 로고화한 도형이 존재하고, 한글 리더스미가 크게, 그 위에 TOTAL BEAUTYCLINIC이 작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국문 리더스와 영문 LEADERS만이 상하로 병기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외관의 비유사함이 문자상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한 점을 상쇄하지 못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로 판단됩니다.

(5)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인의 사용태양의 고려

출원인은 ‘리더스’와 ‘美’가 완전히 분리인식 되도록 상표를 ‘리더스美’와 같이 구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태양을 허용한다면, ‘리더스LEADERS’로 구성된 이의신청인의 선등록상표와 출처의 혼동이 일어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마.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은 선등록상표의 ‘미용실업, 손톱미용업’과 비교하여 신체를 꾸미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질과 내용이 공통되고, 미용실이라는 공간에서 미용상담과 미용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바 그 제공장소,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미용실업, 손톱미용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소결

이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일부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합니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강관리업과 건강진단업은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미용실업’ 등과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출원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가 거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신청의 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제 3

심판청구서의 작성

甲은 등록상표  '황소고집'의 권리자(첨부자료 1)이다. 甲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소고집' 또는 '암소고집'이 포함된 문구를 간판, 메뉴판, 명함 등에 사용하는 50여 개의 업소를 찾았다(첨부자료 2). 이후 甲은 이 업소들에 자신의 상표권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1개월 이내에 간판, 메뉴판, 명함 등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였다.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乙(첨부자료 3)은 2017.9.10. 甲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에 부랴부랴 '암소고집'이라는 상표를 제43류의 '한식점업, 식당체인업'에 대해서 출원하였고, 甲의 상기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하였다(확인대상표장 :  (메뉴판 및 명함에 사용)).

귀하가 乙의 대리인이라 가정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시오. 단, 청구의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으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만 주장하시오. (3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첨부자료 2 : 甲의 검색 결과

첨부자료 3 : 乙의 사용 현황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000567 호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16년09월10일	
	출원번호	2016-0003456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7년05월20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05월20일	
	지정상품	제43류 :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7.05.20.~2027.05.20.) 금액 000,000원 2017년05월20일 납입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7년05월20일 등록

이하여백

2

甲의 검색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도검색을 해 보면, 전국적으로 ‘황소고집’ 으로 검색되는 곳은 30여개 업소, ‘암소고집’ 으로 검색되는 곳은 20여개 업소이며, 이 업소들은 모두 한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암소고집 검색결과입니다.

A 암소고집	육류,고기 숯	042-322-8808 대전 서구	로드뷰	길찾기
B 강가네암소고집	육류,고기	043-262-7438 충북 청주시 서원구	로드뷰	길찾기
C 강가네암소고집	정육점	043-291-74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로드뷰	길찾기
D 청원암소고집한우마을	한식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로드뷰	길찾기
E 암소고집한우푸줏간	육류,고기	053-632-5228 대구 달서구	로드뷰	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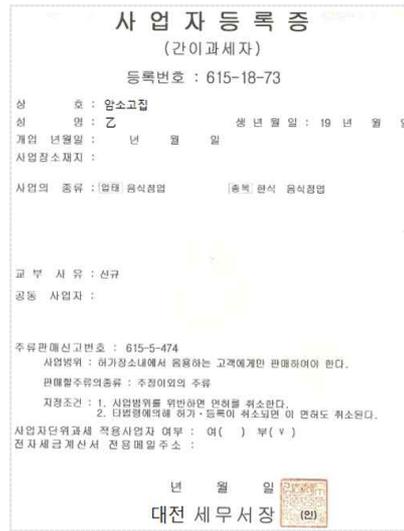
乙은 대전에서 2010.3.27.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1호점(본점)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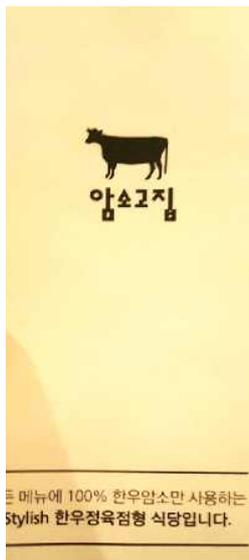
<외부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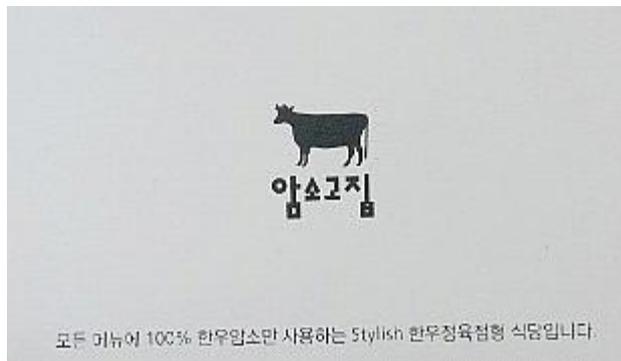
<입간판>



<사업자등록증>



<메뉴판 표지>



<명함 뒷면>

심판청구서 작성 문제에서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등을 문제의 요구에 따라 알맞게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작성하고,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상표의 비유사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가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구법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거래실정 및 사용태양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며, 판례는 해당 부분이 품질 등을 직감할 수 있으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임을 인정해 왔음에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의 취지】

1.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제56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

(생략)

2. 이해관계의 소명

심판청구인은 현재 대전에서 한우 전문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9.10.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121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3.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 상표로서 확인대상표장 사용 여부

(1)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구체적 판단

‘암소고집’은 심판청구인의 상호인데(사업자등록증 참조), 거래실정상 한식점업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호를 간판, 메뉴판, 명함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메뉴판 표지나 명함에 표시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식별력이 없는 암소도형이 부가되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상호에 해당하는 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도,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문자부분을 상호로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 중 확인대상표장이 ‘Ochang 다농마트’인 사건에서, ‘Ochang’과 ‘다농마트’는 쉽게 구별되며, ‘Ochang’은 점포 소재지 지명에 불과하므로, ‘다농마트’는 원고 상호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소 그림’ 도형과 ‘암소고집’이라는 문자가 단순하게 결합된 것으로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①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쉽게 구별되며, ② 확인대상 표장의 도형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직접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③ ‘암소고집’은 상호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6.9.10.) 전인 2010.3.27.부터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해 왔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① 위에 해당하는지는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② 표장이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족하고, ③ 표장 전체 뿐만 아니라 그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위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우 전문 정육식당업’ 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암소고집’ 이라는 문자부분은 소고기 중에서도 ‘암소’ 고기만을 고집스럽게 취급한다는 의미로 직감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소가 ‘암소고집’ 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암소고집’ 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은 실제의 사용태양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메뉴판 표지 하단과 명함에 “모든 메뉴에 100% 한우암소만 사용하는 Stylish 한우정육점형 식당입니다” 라는 문장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암소고집’ 부분은 위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고집’ 부분이 공통되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장을 날인한 것 같은 그림’ 이 필기체로 된 ‘황소고집’ 과 횡서표기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소그림’ 도형이 특정한 글씨체로 된 ‘암소고집’ 과 상하2단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양자는 외관이 현저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큰황소고집’ 이라고 6음절로 호칭될 것임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암소고집’ 이라고 4음절로 호칭되므로, 칭호도 상이합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통큰’ 은 ‘통이 크다. 즉 후하고 도량이 넓다’ 는 뜻이고, ‘황소고집’ 은 ‘쇠고집, 몹시 센 고집’ 이라는 뜻이지만, 확인대상표장에서 ‘암소고집’ 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100% 암소고기’ 만을 취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관념이 상이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합니다.

특히 ‘한우 전문 정육식당업’ 과 같은 요식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매장 내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비스 제공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①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것일 뿐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상표이자(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 동시에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상이하어 상품 제공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입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오니, 청구의 취지와 같이 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제 4

소장의 작성

甲의 등록상표(첨부자료 1)에 대하여 乙이 2017.6.10.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甲의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심결(첨부자료 2)을 하였다.

귀하가 甲의 대리인이라 가정하고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시오. 단, 심결문을 받은 이후에 甲이 조사한 사항(첨부자료 3) 중에서 甲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을 청구원인에 반영하시오. (20점)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상표등록원부

첨부자료 2 : 심결문

첨부자료 3 : 참고자료

주의사항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
4. 청구원인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생략할 것
5.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상표등록원부

상 표 등 록 번 호

제 0012345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1번	출원연월일	2009년04월13일	MERIUMS 메리움스
	출원번호	2009-0001111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0년07월19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0년07월19일	
	지정상품	제3류 : 립스틱, 마스크라, 콜드크림, 향수	

[상표등록료란]

전액납부 10년분 (2010.07.19.~2020.07.19.) 금액 000,000원

2010년07월19일 납입

[상표권자란]

	(최종권리자) 甲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甲	2010년07월19일 등록

이하여백

특 허 심 판 원
심 결

심판번호 2017당1978
심결일 2017.12.10.

주 문

1. 상표등록 제12345호의 등록을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하 심결이유의 요지)

(1)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MERIUMS” 를 표시한 향수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MERIUMS” 를 향수에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심결에서 인정한 사실

- 피청구인은 국내에서 핸드백 상표로 널리 알려진 “MERIUMS” 의 상표권자로서, 전국 백화점 내 50여 곳의 대리점에서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7.5. 향수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향수 500개(규격 30ml)를 1개당

- 10,000원에 납품받았고, 그 제품과 포장지에는 “MERIUMS” 를 표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7.26. 백화점에 있는 대리점 4곳에 각 20개, 15개, 30개, 15개의 향수를 1개당 10,000원 또는 1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피청구인과 대리점은 주로 위 향수를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나) 심결의 판단

피청구인의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MERIUMS” 를 향수에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 판 장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

심결문을 받은 이후에 甲이 조사한 사항

(1)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의 규격과 포장형태를 조사하여 자신의 향수와 비교해 보았다. (향수 판매점 10곳에 대해 조사)

- 향수 판매점에서는 30ml, 50ml, 100ml 등 다양한 규격의 향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30ml 향수는 모든 향수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음
- 30ml 향수의 소비자 가격은 모두 30,000원 이상임
- 향수의 포장형태는 다양하나, 저가 향수의 경우 그 포장의 질과 형태가 甲의 향수와 유사함
- 100ml 이상의 고가 향수를 2개 이상 구매하면 30ml 향수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향수 판매점이 1곳 있음

(2) 시중에서 핸드백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향수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핸드백 판매점 10곳에 대해 조사)

- 핸드백 판매점 10곳 중 5곳이 향수도 판매하고 있고, 향수를 판매하는 5곳 중 4곳이 핸드백과 동일한 상표를 향수에 사용하고 있음
- 향수를 판매하지 않는 핸드백 판매점 5곳 중 1곳에서는 고가의 핸드백 구매 시 사은품으로 향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향수의 상표는 핸드백과 다름

이 문제의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서는 취소대상 심결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청구원인에서는 상표등록취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법리적인 요소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과 관련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향수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임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형 문제라는 특징에 기하여 작성양식과 관련한 주의도 필요한데, 문제의 甲을 원고로, 취소대상 심결을 '이 사건 심결'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甲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거나 취소대상 심결을 '원심' 또는 '원심결'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시답안

*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작성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7.12.10.자 2017당19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생략)

2. 심결 이유의 요지

(생략)

3. 심결 취소사유

가.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3년 “CONTINENTAL 콘티넨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영문과 한글음역을 결합하여 상표로 등록한 뒤 그 영문과 한글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하여도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리움스”는 영문 “MERIUMS”의 한글음역임을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메리움스”가 함께 표시되거나 생략됨에 따라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메리움스”를 생략하고 “MERIUMS”만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관념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사

용상표 “MERIUMS” 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MERIUMS” 를 향수에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핸드백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7.5. 향수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향수 500개(규격 30ml)를 1개당 10,000원에 납품받았고, 그 제품과 포장지에는 “MERIUMS” 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7.26. 백화점에 있는 대리점 4곳에 각 20개, 15개, 30개, 15개의 향수를 1개당 10,000원 또는 1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원고와 대리점들은 주로 위 향수를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의 규격을 보면 원고의 향수와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그 포장의 질과 형태를 보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의 향수를 접할 경우 그 규격과 포장으로 인하여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판매용 제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처럼 핸드백을 판매하는 여러 곳에서 핸드백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향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로부터 향수를 제공받을 경우 단순한 마케팅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핸드백 업체들처럼 핸드백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들이 위 향수를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원가의 2배에 판매한 점, 원고가 대리점들에게도 원가 또는 제조원가 이상을 받고 팔았다는 점, 원고의 향수의 규격과 포장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와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타 핸드백 업체들이 향수도 판매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향수를 접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의 향수를 핸드백 마케팅용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판매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MERIUMS” 를 향수에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향수 및 향수의 포장지에 표시한 “MERIUMS” 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입니다. 원

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향수 또는 향수의 포장에 표시하였고, 그 향수를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대리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향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부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